

담양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「담양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8. 25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조례
일괄개정조례안

2. 제안 이유

-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‘간사’라는 명칭이 담양군의회 위원회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직위 호칭과 사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‘부위원장’으로 변경함으로써 담양군의회 위원회 회의

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가. 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- 제12조의 ‘간사’ 명칭 개정

나. 「담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제4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)제5항의 ‘간사’ 명칭 개정

4. 입법 예고 기간 : 2026. 8. 25. ~ 8. 31.(6일간)

5. 의견 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

담양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조례
일괄개정조례안

2. 의견

관련조문

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

성명

)

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조례

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나목 중 “회의규칙”을 “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, “각종 규칙”을 “조례·규칙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결산안”을 “결산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간사)”를 “(부위원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간사는”을 “부위원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공무원”을 “직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을”을 “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을”로 한다.

제2조(「담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의 개정) 담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따라 담양군의회의를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따라 담양군의회”로 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첨부해야”를 “첨부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

항 제4호 중 “**재산 등록사항**”을 “**재산등록사항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**채납실적**”을 “**채납 실적**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제8조제5항 전단 중 “**하는 경우에는**”을 “**할 때는**”으로, “**제출해야**”를 “**제출하여야**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“**송부해야**”를 각각 “**송부하여야**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**제출해야**”를 “**제출하여야**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**해야**”를 “**하여야**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**첨부해야**”를 “**첨부하여야**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본문 중 “**송부해야**”를 “**송부하여야**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, “**송부해야**”를 “**송부하여야**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**협조해야**”를 “**협조하여야**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**경우에는**”을 “**때에는**”으로, “**검증을 행**”을 “**검증**”으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**경우에는**”을 “**때에는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**유지돼야**”를 “**유지되어야**”로 한다.

제16조 전단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**소명해야**”를 “**소명하여야**”로 한다.

제17조 전단 중 “**경우에는**”을 “**때에는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**소명해야**”를 “**소명하여야**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**공정을 기할**”을 “**공정하게 할**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**(준용규정)**”을 “**(준용)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	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----- ----- -----.
1. 의회운영위원회	1.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회의규칙</u>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<u>각종 규칙</u> 에 관한 사항	나. 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 ----- ----- <u>조례·규칙</u> ----- ----
다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특별위원회) ① (생략)	제8조(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회는 예산안과 <u>결산안</u> 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.	② ----- <u>결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<u>간사</u>) ① 위원회에는 <u>간사</u>	제12조(<u>부위원장</u>) ① ----- <u>부위원</u>

1명을 둔다. ② <u>간사는</u>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<u>간사가</u>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제14조(전문위원)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조할 수 있는 <u>공무원</u>을 둔다. ②·③ (생략) 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,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<u>담양군의회 회의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	<u>장</u> -----. ② <u>부위원장은</u> ----- -----. ③ ----- <u>부위원장이</u> ----- --. 제14조(전문위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직원</u>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 「<u>담양군의회 회의 규칙</u>」을 ----.
---	--

제2조(「담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47조의2에 따라 <u>담양군의회의</u>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47조의2에 따라 <u>담양군의회</u> ----- ----- -----.

제4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) ① ~

④ (생략)

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⑥ (생략)

제6조(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) ①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4조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

5. 최근 5년간의 소득세·재산세(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)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

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7조(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)

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

제4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) ① ~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부위원장 -----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) ① -----

----- 첨부
하여야 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 재산등록사항

5. -----
----- 체납 실적-

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)

① -----

-----.

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
회부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8조(위원의 질의 등) ① ~ ④
(생략)

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
해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
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
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
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
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
야 한다.

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
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. 이 경
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
고,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
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
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
하며,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
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
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
다.

제9조(증인 등의 출석요구) 위원
회가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
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

----- 때는 -----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의 질의 등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할 때는 -----

----- 제출하여야 --. -----
----- 송부하여
야 ---.

⑥ -----
-----.

----- 송부하여야

----- 제출하여야 --
--.

제9조(증인 등의 출석요구) ----

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
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.

제11조(인사청문경과보고서) ①
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
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
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
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
를 첨부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(위원장의 보고) ① (생
략)

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
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
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
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
다. 다만, 인사청문을 마친 후
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
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
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
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
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
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
다.

제13조(자료제출요구) ① (생략)

----- 하여야 --.

제11조(인사청문경과보고서) ① -

-- 첨부하여야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원장의 보고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송부하여야 -
--. -----

때는 -----

----- 송부하여야 -
--.

제13조(자료제출요구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
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
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
다.

제14조(검증) 위원회는 인사청문
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
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
을 행할 수 있다.

제15조(인사청문회의의 공개) 인사
청문회는 공개한다. 다만,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
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
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
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
고 인정하는 경우

제16조(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
호)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
대상자·증인·참고인 등이 답
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
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
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
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
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

② -----

----- 협조하여야 -
--.

제14조(검증) -----

--- 때에는 ----- 검증---
-----.

제15조(인사청문회의의 공개) ----
-----.

때에는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-- 유지되어야 -----

제16조(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
호) -----

----- 때는 -----

-----.

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<u>소명해야</u> 한다.	----- -- <u>소명하여야</u> ----- -----.
제17조(답변 등의 거부) 인사청문 대상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<u>경우에는</u>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<u>소명해야</u> 한다.	제17조(답변 등의 거부) ----- ----- ----- <u>때</u> <u>에는</u> ----- -----. ----- <u>소명</u> <u>하여야</u> ----- -----.
제18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<u>공정을 기할</u>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. ② (생략)	제18조(제척과 회피) ① ----- ----- ----- <u>공정하게 할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(<u>준용규정</u>) (생략)	제20조(<u>준용</u>) (현행과 같음)